

# 감사인의 보고책임이 계속기업의 의견결정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Accountability on Auditor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of Going Concern

고 성 호 (Ko, Seong Hyo)\*\*

### < 개 요 >

최근 개정된 회계감사준칙에서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계획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계속기업가정상의 적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계속기업가정에 대해 경영자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 감사계획시 고려사항, 경영자의 평가에 대한 고려, 추가적 감사절차 그리고 감사결론과 보고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회계감사기준 개정 이후에 감사인의 계속기업에 대한 보고책임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감사인의 판단 및 계속기업에 대한 의견결정을 할 때 보고책임의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 및 심리학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특히 주된 초점은 다음 두 가지 측면 즉, 판단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관점에서 보고책임에 대한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 및 인지과정에서 보고책임의 영향과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 및 의견결정을 할 때 보고책임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감사인의 의사결정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 서 론

1999년 2월에 개정된 회계감사준칙에서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계획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계속기업가정상의 적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계속기업가정에 대해 경영자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 감사계획시 고려사항, 경영자의 평가에 대한 고려,

\* 이 논문은 1998년 제주대학교 해외과건연구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추가적 감사절차 그리고 감사결론과 보고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회계감사기준 개정 이후에 감사인의 계속기업에 대한 보고책임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회심리학연구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보고책임을 갖고 있는 의사결정자들은 보고책임이 판단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감사인의 보고책임은 판단 및 의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일면이 있다. 감사인은 감사의뢰인, 타감사인,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최근까지 감사인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보고책임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중시하지 않았다.

Ashton(1974)은 감사인의 판단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이후 감사판단 과정과 관련된 다수의 문제들을 조사하여 왔는데, 그 결과 감사인들은 인지심리학에서 구체화된 직관(heuristics)과 편의(예, 대표성, 초기값 설정 및 조정, 및 순서효과)가 감사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편의는 특정 감사상황에서 완화되거나 수정된다는 것이다(Smith & Kida 1991). Tetlock(1985a)은 인지연구 패러다임이 판단과 의사결정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의사결정자에게 직면하는 사회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의사결정환경의 본질적 특성에 상응하여 발전되어온 행위전략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환경 영향요인 가운데 보고책임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대부분 의사결정환경 가운데 하나의 특성으로 개인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Tetlock(1985a)은 보고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보고책임은 중요한 규칙 및 규범을 강요하는 메카니즘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개인적 의사결정과 그들이 소속한 사회제도간의 사회심리학적 관계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은 그들이 수행한 모든 결과에 대해 명시적 또는 암묵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책임은 특정 전문직업인(예,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분야의 전문직업인들은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상황에 항상 처해 있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문감사인은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정당화시킬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까지 감사인의 보고책임에 대한 판단연구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여 왔다. 그런데 감사인의 판단과정에서 보고책임의 중요성은 Gibbins & Emby(1984)에 의해 수행한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전문감사인의 판단의 질(質)과 그 결과를 조사하였다. 실무감사인들에 의한 전문적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조

사된 판단의 질은 의사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다. 더불어 감사인들은 판단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정보탐색이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감사인의 판단 및 계속기업에 대한 의견결정을 할 때 보고책임의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 및 심리학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특히 주된 초점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판단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관점에서 보고책임에 대한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 및 인지과정에서 보고책임의 영향과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 및 의견결정을 할 때 보고책임의 영향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Messier & Quilliam(1992)의 감사에서 가설개발을 위한 이론을 토대로 하여 감사인의 계속기업에 대한 보고책임이 의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 Ⅱ. 보고책임을 위한 전략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한 보고책임은 의사결정을 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 사전적 의사결정 보고책임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타인에 대해 미리 방어해야 할 때 나타난다. 이를 조망적 합리성(prospective rationality)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가장 방어가능한 입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지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은 이미 행한 의사결정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할 입장에 처할지도 모르며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입장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 바람직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은 과거의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회고적 합리성(retrospective rationality)을 끌어들이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인지과정에서 많은 부분은 체면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다.

보고책임은 곤경에 처하거나 처할 가능성이 있을 때 개인의 판단이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곤경은 행위자가 실재 또는 가상의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손해배상을 요구받거나 요구받을 가능성에 대한 명성에 바람직하지 않는 사건에 처한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곤경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또는 실재의 부정적 입장을 말한다. 따라서 곤경은 개인행위의 결과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신념과 일치되지 않을 때 처하게 된다. Schlenker(1986)는 통상적으로 곤경에 처하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 가) 자신의 결정이나 행위가 대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것으로 믿는다.
- 나) 자신의 성과가 타인에 의해 평가될 것으로 믿는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이 존재한다.
- 다) 자신의 결정을 해명 또는 정당화하거나 타인을 이해시킬 수 있음을 기대한다.

이들 조건은 감사인의 일상적 행위환경에서 나타난다.

Tetlock(1985b)은 곤경의 정도는 ① 사건의 바람직하지 못함의 정도, ② 사건에 대한 개인의 외양적 책임, ③ 자신의 명성유지에 대한 개인의 욕구, 세 가지 요소의 함수로 보고 있다. 이들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증가하면 인지된 곤경의 정도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곤경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은 해명(accounts)과 사과(apologies)가 있다 (Schlenker 1980). 해명은 곤경을 유도하는 사건을 이해시키는데 사용되며, 사과는 비난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사건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2.1. 해명 (accounts)

사람들은 곤경에 대한 영향을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할 것이다. Schlenker는 곤경에 처할 때 사용하는 3가지 해명형태 즉 결백(innocence), 변명(excuses), 및 정당화(justification)에 의한 방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형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중복되는 것들이다.

### 2.1.1. 결백(innocence)

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즉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 또는 그 사건에 책임(인과관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상대방이 결백을 인정한다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방어수단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방어를 위해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확신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사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간 거리가 멀고 간접적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어는 변명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많은 경우 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둘째 상황은 종종 감사인의 감사에서 발생한다. 감사실패가 없다 할지라도 기업실패 소송이 제기된 감사인 및 그 회계법인의 경우이다.

### 2.1.2. 변명(excuses)

변명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극소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사건이 발생되고 다소 그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경우이다. 변명은 예상치 못한 결과나 완화된 환경에서 나타나는 형태일 것이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행위나 사건이 부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을 경우이다. 예측가능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음을 보여 준다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완화된 환경이 나타나는 경우는 개인으로부터 사건을 유도한 환경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감사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불법행위)이 발생되고 감사인이 그것을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을 때 감사인은 감사기준에 의거하여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 2.1.3. 정당화(justifications)

정당화는 사건의 부정적인 결과를 극소화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물론 사건의 발생은 그 사건에 대한 다소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Schlenker(1980)는 세 가지 정당화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 극소화, 비교를 통한 정당화, 이상적인 목표를 통한 정당화이다. 직접적 극소화(direct minimization)에서는 사건의 바람직하지 않는 속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형태는 행위나 사건을 정당화시키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곤경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종종 이전에 그 행위에 대해 용서를 받았고 면죄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입증부담을 지기를 원한다. 비교를 통한 정당화는 감사인이 소송에 대응할 때 종종 발견될 수 있다. 보통 전문적 증거라 함은 전문적 감사인이 기대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감사인이 행위를 하였음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목표를 통한 정당화라 함은 사건을 바람직한 목표의 의미로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 행위가 어떤 다른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도 있다. 감사의뢰인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못한 회계원칙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적정의견을 줄 경우, 이러한 정당화 형태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 2.2. 사과(apologies)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처치 전략은 사과이다. 정상적으로 이 전략은 과거의 행위나 사건(예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거나 계속기업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으로 나타나는 곤경에 처할

때 사용된다. 사과는 개인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 결과이다. 그러한 경우 개인은 그러한 사건이 정상적 행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비난을 받아드리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아 그 대가(죄)를 기꺼이 수용할 때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대가(죄)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될 때, 대부분 사과를 이용할 것이다.

Bosk(1979)는 레지던트 의사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에서 사과를 이용하였다. 레지던트를 감독하는 의사들은 필요하다면 동료의사들에게 오류에 대한 사과를 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동료의사들에게는 거의 배타적으로 사과를 하겠지만 그 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사인들도 판단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감사인들은 이러한 판단상 오류가 정상적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에게 사과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과는 감사의뢰인이나 제3자에게는 이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3. 감사에서 보고책임 전략

감사인은 감사의뢰인, 제3자, 타감사인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해 평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책임전략을 사용한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항시 행위나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사결정은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감사인이 어떤 보고전략을 사용하고, 전략을 사용하기 위한 동기, 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내용이 없다.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이야말로 감사인의 의사결정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mby & Gibbins(1988)는 보고책임전략에서 감사인의 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연구하였다. 피험자인 감사인들에게 감사상황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당화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했다. 피험자들에게 특수한 감사상황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들의 감사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두 가지 요인으로 조작하였는데, 상황에 대한 친숙성과 긍정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상대적 정도이다. 그 결과는 친숙성에 대해 주요과가 유의적이었다. 법인의 모든 감사인들은 익숙한 상황보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큰 정당화를 필요로 했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보고책임을 사용한다는 심리학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보다 엄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더 크게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긍정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감사인의 책임에 따라 다양했다.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이 큰 경우

에 파트너의 욕구는 정당성을 더 필요로 하는 양상을 보였다. 몇 비파트너의 반응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 한편, 나머지 비파트너들은 긍정 및 부정적 결과가 비슷한 상황(예로 결과에 대해 가장 큰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서 가장 큰 정당성을 필요로 했다.

Emby & Gibbins(1988)는 두 가지 반응 패턴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오류의 형태(즉 규범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에 의한 원인인 지를 조사하였다. 규범적 오류는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의 성격과 방법에 관련된다. 예를 들면 비윤리적 행위는 규범적 오류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술적 오류는 사실의 문제와 관련된다. 계산상 오류는 기술적 오류의 한 예다. Emby & Gibbins는 일차적으로 규범적 오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감사인은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기대할 때 더 큰 정당성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상정을 하였다. 한편 그들은 기술적 오류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감사인은 부정 및 긍정적 결과가 비슷할 때 더 큰 정당성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파트너는 주로 규범적 오류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규범적 오류에 대해 더 큰 정당성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욕구는 회계법인의 평판뿐만 아니라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결과이다. 또한 비파트너들이 규범적 오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비파트너들은 기술적 오류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규범적 오류보다 기술적 오류에 더 큰 정당성을 필요로 하는 비파트너들은 기술적 오류가 부정적 평가결과를 가져오는 법인내 자신들에 대한 평가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의사결정 및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인들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평가에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감사의뢰인과 기타 이해관계자는 그러한 감시자 및 평가자다. 각 감시자는 감사인에 대해 엄격하게 신성함을 요구하기도 한다.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의뢰인은 감사인을 교체할 수도 있다. 어떤 감사인들은 법인내 감사인, 다른 법인의 감사인, 공인회계사회 등 감시자에 의해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들 감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전문적 권한을 줌과 동시에 상호감리를 통하여 성실성을 강요하기도 한다.

감사인은 평가자들의 관점이나 수준이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감사인은 기술적 진부화를 이유로 재고자산을 저평가하기로 하였다면, 감사의뢰인이 그에 동의하지 않고 감사인을 위협할 것이다. 동시에 공정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저평가를 요구하는 제3자인 채권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인은 의뢰인과 제3자의 상충적 견해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보고책임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감사인의 보고책임에 사용된 전략과 잠재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사회심리학에서 조사되어 왔는데, 감사상황에서도 재조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Ⅲ. 보고책임과 정보처리과정

자신의 판단이나 행위에 대해 책임을 가진 사람은 정보처리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책임은 개인에게 보다 더 복잡한 인지사고과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보다 많은 복잡한 사고과정을 함으로써 판단과정상 긍정 및 부정적 양쪽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3.1. 상황모형 및 분석적 처리과정

인지연구에서 개인은 직관(heuristics)을 사용하는 경향을 갖는 인지적 속성이 있다고 한다. Beach & Mitchell(1978)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해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을 때 분석적 처리과정(상대적으로 높은 인지적 노력수준을 필요로 함)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상황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적 처리과정의 사용은 의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없고, 중요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또는 불안정적일 때 더욱 강조될 것이다. 분석적 처리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일반적으로 인지적 노력이 덜 필요할 때 종종 직관에 의존하는 처리과정으로 바꿀 것이다. 직관적 처리과정은 보통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 낮을 때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될 때 이용될 것이다. 다수의 연구들이 상황모형의 예측을 지지하고 있다.

Cvetkovich(1978)는 내기과업에서 피험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책임이 클 때 더 분석적임을 발견했다. 그들의 판단은 직관적 처리과정을 이용하는 낮은 개인적 책임을 가진 피험자 집단보다 더 분석적이었다. 또한 분석적 피험자들은 판단을 하는 시간이 더 길었고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했으며, 자신의 의사결정전략을 더 잘 알고 있었다. 또한 Ford & Weldon(1981)은 보고책임이 있을 경우 의사결정 시간을 더 길게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McCallister et al.(1979)는 MBA 프로그램에 등록된 경영자들의 실험상황에서 상황모형을 조사했다. 신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킬 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일련의 경영사례를 경영자들에게 제시했다. 세 가지 요인을 각 두 가지 상태로 조작하였다. 즉 이는 의사결정의 중요성(중요 또는 중요하지 않음), 의사결정의 거역성(거역 또는 비거역), 그리고 의사결정자의 책임성(책임이 있거나 없음)이다. 상황모형에 의한 예측결과를 보면, 피험자들은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거역할 수 없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있을 때 가장 큰 분석적 처리과정 상태를 보

이는 경향이 있었다.

Tetlock & Kim(1987)은 개인적 예측과업에서 보고책임 문제를 조사했다. 피험자들을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보고책임이 없는 집단, 사전 노출된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 그리고 사후 노출된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이다. 보고책임이 없는 집단은 그들의 반응을 익명으로 하도록 했다. 사전 노출 피험자들은 과업을 시작하기 전에 과업을 알려주었다. 사후 노출 피험자들에게는 과업을 완성한 후에 응답을 입증하도록 했다. 타 집단과 상대적으로 사전 노출집단이 보다 더 복잡한 인지과정을 나타냈고, 보다 더 정확한 응답을 했으며,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보다 더 큰 신뢰성을 보여 주었다. Tetlock & Kim은 사전 노출집단이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보고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과업수행 중 직관적(자동적) 처리과정에 의존하지 않았다. 다른 두 집단은 그 과업에 대해 보고책임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인지적 노력을 줄이기 위해 직관적 처리과정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Chaiken(1980)은 보고책임이 전달자의 유사성을 조사할 통하여 분석적 처리과정을 유도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유사 및 비유사 전달자의 논의문제를 높고 낮은 보고책임 피험자 양쪽을 제시했다. 높은 보고책임을 가진 피험자들은 그 논의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원천의 유사성은 없었다. 낮은 보고책임을 가진 피험자들은 그 반대였다. 그들은 유사한 원천에 가장 설득적이었으며, 제시된 논의의 강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낮은 보고책임을 가진 피험자들은 직관적 정보처리과정을 이용한 한편, 높은 보고책임을 가진 피험자들은 결론에 이르기 이전에 논의의 강도를 분석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석적 처리과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의 경우, 집단의 판단에 참여하는 개개인은 그들이 의사결정에 책임이 없다면 사회적 편승에 따라갈 것이다. 집단은 보고책임이 없는 개인적 의사결정자 보다도 덜 복잡한 의사결정전략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편승은 군중속에 묻혀 버린 결과로 보는 것이다.

감사인들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그들의 업무수행에서 사회적 편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첫째, 보고책임은 사회적 편승을 제거하는 경향이 있다. 보고책임을 갖고 있을 때, 개인 의사결정자 및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복잡한 의사결정 전략을 사용한다. 감사인들 및 그들의 회계법인은 정상적으로 그들의 모든 업무수행에 대해 보고책임을 지고 있다. 둘째, 개인적으로 상정한 집단구성원의 투입은 사회적 편승효과를 막는 것이다.

여러 상황에서 감사인들의 수용가능한 직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평판을 유지하려는 경우와 GAAS 및 GAAP에 따른 요소들에 의해 완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 다른 감사상황에서는 의사결정상황이 규범적으로 모호할 경우 서로 다른 결론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규칙의 비탄력성(엄격성)은 정부(正否)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 의사결정자의 주관적인 측면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감사인이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수용가능한 대체안 선택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합하고자 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가능한 직관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감사인들은 GAAS 및 GAAP에 따라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평판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보고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수용가능한 직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Buchman et al.(1989)은 그러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업이 합법성을 내포한 것을 기술한 사례를 실무감사인에게 제시하였다. 그들의 과업은 잠재적 우발부채의 적절한 공시와 발행되어야 할 감사의견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견결정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것이다. 피험자들을 세 집단 즉 감사결과에 대해 누구에게도 보고책임이 없는 경우, 감사의뢰인에 대한 보고책임이 있는 경우,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보고책임이 있는 경우로 나누었다. 파트너는 한정 의견 감사보고를 원하는 반면 의뢰인은 적정 의견을 원한다고 피험자에게 알려 주었다. 보고책임의 조작은 선택된 공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감사인은 선택된 감사보고에 영향을 미쳤으나, 경험이 없는 감사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의뢰인에 대해 보고책임이 있는 경험이 있는 감사인은 적정 의견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보고책임이 없는 감사인은 한정 의견을 선택했다. 이와 같이 감사인의 의사결정은 보통 모호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Lord(1992)는 보고책임이 의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피험자를 두 집단 즉 감사책임에서 파트너에 대한 보고책임이 없는 피험자와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은 대부분 한정 의견을 더 낼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피험자들에게 파트너의 견해를 주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는 수용가능한 직관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한 것은 아니었다. 대신에 Lord는 적정 의견보다 부적절하게 한정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보수주의적인 편향이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상황요인(의뢰인의 재무상태 등)은 보고책임이 없는 피험자와 보고책임이 있는 피험자의 의사결정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예로 보고책임이 있는 피험자는 문제가능성이 있는 회계상태를 선호하지 않았다.

Buchman et al.과 Lord의 연구에서 피험자에게 오직 한 이해관계자로 정해 주었다. 그런데 실제 감사상황에서, 감사인들은 적어도 셋 이상의 이해관계자에 동시에 보고책임이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간 이해가 상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Buchman et al.과 Lord는 감사인이 공시 및 의견결정에서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정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은 의뢰인의 결정에 방어하려는 많은 인지적 노력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정의견은 아마도 의뢰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적정의견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에 대한 방어방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이다.

Buchman et al.과 Lord는 피험자들이 특정 시점에서 단지 한 집단에서만 보고책임에 대한 단서를 주었기 때문에 실제 감사상황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 감사인들은 이해관계자(의뢰인, 제3자 및 타감사인)의 관점을 알고 있다. 그런데 다음의 이유로 다른 집단보다 수용가능한 직관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첫째,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감사인은 맹목적으로 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적절한 증거 없이 단순히 관점을 바꾸는 감사인은 GAAS의 위배로 자신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것이다. 결과적으로 감사인은 감사에서 판단을 내린 후 아마도 방어수단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인은 GAAS와 평판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더 복잡한 정보처리과정을 보일 것이다.

방어비용은 의사결정자가 방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방어벽은 행위과정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나온다. 특히 의사결정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그러한 책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의사결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이는 특히 의사결정이 회복불능이고, 의사결정자가 그 결과에 대해 개인적 책임이 있고, 의사결정이 중요한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많은 감사 의사결정들이 그러한 감사비용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면 감사의뢰인의 재고자산이 과대평가 되었다고 가정하자. 감사인은 이에 대해 의뢰인의 항변 여부에 관계없이 GAAS에 따라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의뢰인이 그에 대해(부정적 결과) 항변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인은 의뢰인의 결정을 방어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GAAS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부가적 증거를 수집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가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감사자원이 소비된다. Gibbins & Emby (1984)의 연구결과는 부가적 증거수집은 의사결정을 한 후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 3.2. 판단과정에서 보고책임의 영향

앞에서 보고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다 더 복잡한 인지과정(분석적 처리과정)을 거칠 것이

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복잡한 정보처리과정은 개인의 판단과정에 긍정 및 부정적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가적 증거를 제시했다. 한편 보고책임은 순서효과를 완화시키며, 동시에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의 영향(회석효과)을 증가시킬 것이다. 부가적으로 보고책임은 일관성과 합의를 증대시킬 것이다.

### 3.2.1. 보고책임의 순서효과(order effects) 완화

심리학에서 많은 문헌에서 개인이 정보를 평가하는 순서가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환경하에서 초두효과(primacy effects)가 있는가 하면, 다른 상황에서 최근효과(recency effects)가 나타난다. 초두효과는 원초신념(initial belief)에 대한 개인의 초기 값(anchoring)이 부가적인 진단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원초신념을 유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최근효과는 제일 나중에 제공된 정보에 개인적 가중치를 많이 주는 결과로 나타난다. 감사인은 혼합증거를 평가할 때 최근 효과를 나타낸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 가운데는 의사결정에 보고책임을 가진 피험자들에 대한 연구는 없다. 보고책임이 더욱 심도 있는 정보처리 과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Tetlock(1983)의 연구에서 초두효과를 줄인다는 것처럼 최근효과를 줄일 것이라는 것이다.

Tetlock은 판단과정에서 개인적 보고책임에 의해 증대된 인지적 노력이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초두효과를 보였다고 주장을 했다. 그는 세 집단 즉 보고책임이 없음, 사전적 보고책임, 사후적 보고책임으로 피험자를 나누었다. 사전적 보고책임을 가진 피험자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보고책임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반면 사후적 보고책임이 있는 피험자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보고책임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에 대해 순차적인 방법으로 여러 증거들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이 죄가 있는 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보고책임이 없고 사후적 보고책임이 있는 집단에서 유의한 초두효과를 보였으나, 사전적 보고책임 집단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사전적 보고책임 집단은 순서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보다 심도 있는 정보처리과정으로 일관성이 있는 판단을 했다. Tetlock은 이러한 초두효과의 감소(완화)는 정보입력과정에서 보고책임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 3.2.2. 보고책임의 회석효과(dilution effects) 증대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은 진단(diagnostic)과 비진단성(예, 비목적적합성)을 연계시켜 개인에게

진단적 정보만을 제시할 때 더 큰 회귀적(덜 극단적인) 예측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회석효과는 대응형태 및 유사성 판단의 한 정보처리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비목적적합한 정보는 덜 극단적인 판단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사건과 예측 결과간 유사성을 줄인다는 것이다.

Tetlock & Boettger(1990)는 보고책임이 피험자들의 인지적 노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진단적 정보에 의해 자신들의 예측을 회석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보고책임이 있고 없음에 대한 단서를 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그들에게 제시하였다. 보고책임이 있는 피험자들은 보고책임이 없는 피험자들보다 더 많은 범위의 정보를 사용했으나, 정보사용에서 선택적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고책임이 판단상 요인간 복잡한 연계성을 유도하여 더 큰 통합 가능성이 원인일 것으로 보았다. 또 다른 설명은 보고책임이 있는 피험자들이 수취한 각각의 증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각각의 증거는 판단상 목적적합하다고 가정했다는 것이다. 순서효과를 완화시키는 동일한 처리과정(보다 더 복잡한 정보처리과정)이 피험자들에게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진단적 정보의 영향을 더 회석시킨다는 것이다.

Hackenbrack(1992)은 허위 재무보고를 한 기업공시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능력의 회석효과를 조사하였다. 그는 예측한 회석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하였다. 첫째 실험에서, 진단적 정보(예, 허위보고를 제시한 형태)와 비목적적합한 정보의 조합을 시니어 감사인에게 제시했다. 39명의 피험자 가운데 32명이 그들의 판단에서 회석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허위보고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할 경우와 이러한 허위의 잠재가능성의 평가보다 더 낮으면 중요하게 잘못된 재무제표를 탐색하지 못한 책임을 감사인에게 돌릴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실험은 상반된 진단증거를 가진 비목적적합한 정보를 포함한 경우의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상반된 진단증거는 허위보고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의도를 가진 기업의 관점을 기술한 형태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서 39명의 시니어 감사인 중 34명이 그들의 판단에서 회석효과를 보였다. 감사인의 위험평가는 아주 높았다. 이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심사숙고하여 세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 3.2.3. 보고책임의 판단상 일관성(consistency) 및 합의성(consensus)

보고책임이 보다 더 심도있는 정보처리과정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역시 판단정책에 보다 큰 일관성을 유도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연구에서는 보고책임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랜즈모델에 포함된 다중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왔다. 예를 들면, Hagafors & Brehmer(1983)는 다중의 단서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한 피험자들이 더 큰 판단상 일관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이는 특히 과업예측능력이 낮은 경우에 일관성이 있었다. 이 경우에 일관성은 내포된 단서와 개인의 예측간 상관관계가 있었다. 과업예측능력은 기준사건과 단서간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보고책임은 합의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Rozelle & Baxter(1981)는 녹화 인터뷰를 받는 피험자의 판단을 연구하였다. 보고책임(accountability) 및 책임(responsibility)은 피험자간 높고 낮은 수준 양쪽으로 조작하였다. 높은 보고책임을 가진 피험자에게 집단 상황내에서 그들의 판단을 하는데 논의를 해도 좋다고 했고, 낮은 보고책임을 가진 피험자들에게는 익명으로 하도록 했다. 높은 보고책임과 높은 책임은 상호판단의 합의성을 증대시켰다.

감사판단은 일반적으로 높은 보고책임과 높은 책임을 내포한다. 이들 두 요인은 이전의 감사 합의성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었다. Johnson & Kaplan(1991)은 보고책임이 제공된 단서에 기초하여 재고자산의 진부화 위험을 추정하도록 하는 과업에서 감사인의 판단상 일관성, 안정성, 및 합의성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보고책임을 가진 피험자는 더 큰 자기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Ashton은 다른 감사상황에서 보고책임의 영향을 조사했다. 그는 감사인인 피험자에게 재무비율을 제시하여 Moody의 사채비율을 추정하도록 했다. 피험자 중 세 실험집단은 의사결정 도구를 가진 보고책임이 없는 피험자, 의사결정 도구가 없는 보고책임이 있는 피험자, 그리고 의사결정 도구가 없고 보고책임도 없는 피험자(통제집단)이다. 의사결정 도구는 재무비율의 구성치이다. 의사결정 도구를 가진 보고책임이 없는 피험자와 보고책임이 있는 피험자 모두 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판단상 일관성, 정확성, 및 합의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보고책임과 의사결정 도구 모두는 판단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아마도 서로 다른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보고책임이 있는 피험자의 높은 판단의 질은 인지과정에서 심도를 높이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의사결정 도구를 가진 피험자는 단지 그 산출결과에 기인할 것이라는 것이다.

유사한 의사결정 과업을 사용한 Ashton(1990)은 피험자에게 그들의 판단을 정당화(설명)시키도록 요구할 때 의사결정 도구가 판단성과를 감소시키고 성과변동성을 증가시켰음을 밝혔다. 피험자의 판단과 도구의 권고사항간 유사성은 정당화를 요구할 때 감소했다. 그런데 의사결정 도구가 없는 경우, 보고책임은 판단성과를 증가시키고 성과변동성을 감소시켰다. 그러한 도구가 제시되는 경우, Ashton은 피험자의 의사결정 전략은 그 도구사항과 다르다는 조사결과를 얻었는데, 그 이유는 피험자들이 단지 그 도구에 의존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정당화시키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 Ⅳ. 계속기업의 의견결정과정에서 보고책임의 영향

### 4.1. 계속기업에 대한 보고책임의 중요성과 판단의 특징

감사인의 회계감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국면중의 하나가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 즉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계속기업가정의 적정성'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심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감사보고에 누락된 사유에 의해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감사인은 대내외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더구나 기업의 사회성·공공성, 공익성이 강조되는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감사인의 책임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계속기업에 관한 판단에서 적절한 감사절차의 적용과 그 결과에 대한 보고책임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1년 12월에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실시과정에서 계속기업의 존속 여부에 중요한 의문사항을 검토하고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의문해소에 필요한 제반 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경영계획을 평가한 후에도 기업의 존속에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의문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계속기업이 의문시되는 정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계속기업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법(개정 이전의 우리 회계감사기준과 1981년 미국의 SAS No.34)보다 감사인의 책임범위를 강화시킨 No.59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1999년 2월에 전면 개정된 회계감사준칙은 계속기업으로서의 회사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파악된 경우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계속기업가정에 대해 경영자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 감사계획시 고려사항, 경영자의 평가에 대한 고려, 추가적 감사절차 그리고 감사결론과 보고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확실성의 해결을 위해 수립한 경영계획의 효과 및 기타 불확실성의 해소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감사증거에 대한 검토 후에도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정의견(특기사항문단에 기재) 또는 '한정의견'이나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sup>1)</sup> 따라서 개정된 감사준칙에서는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감

1) 회계감사준칙 570 계속기업(문단 20-23)에 의하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계속기업의 타당한 경우에는 ① 만일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면 적정의견을 표명하되 특기사항문단을 추가하고 ②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의견이나 부적정 의견을,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사인의 보고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감사인은 모든 피감사회사에 대하여 계속기업으로의 존속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이다. 특히 수많은 관련자료들이 처리 되어야하기 때문에 매우 비구조적(unstructured) 정보집약적(information intensive)인 작업이다. 이와 같은 인지과정에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에 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실무에서는 경험이 많은 감사인들만이 계속기업판단에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의 계속기업에 대한 보고책임은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절차의 수행,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판단 및 의견결정에 이르기까지 정보처리방법과 인지과정에서의 편의에 영향을 미친다.

#### 4.2. 계속기업판단에 대한 보고책임의 영향

대부분의 경우 감사인들은 이해관계자(의뢰인, 제3자 및 타감사인)의 관점을 알고 있다. 그런데 다음의 이유로 다른 집단보다 수용가능한 직관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첫째,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감사인은 맹목적으로 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적절한 증거가 없이 단순히 관점을 바꾸는 감사인은 GAAS의 위배로 자신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것이다. 결과적으로 감사인은 감사에서 판단을 내린 후 아마도 방어수단을 찾을 것이다. 따라서 계속기업 보고에 대한 감사의뢰인 및 이해관계자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감사인은 GAAS와 평판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특히 보고책임이 있는 감사인은 더 분석적이고 더 복잡한 정보처리과정을 보일 것이며 판단과정상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계속기업에 대한 보고책임은 순서효과를 완화시키며, 동시에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의 영향(회석효과)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계속기업에 대한 보고책임은 일관성과 합의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고성효(1994)는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과 보고에 대한 연구에서 감사증거의 순서효과 즉 혼합증거에 의한 최근효과(recency effects)가 있음을 보였다. 더불어 보고책임이 있는 감사인은 보고책임이 없는 감사인보다 계속기업의 보고에 대한 판단 및 보고결정에서 순서효과를 더 완화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보고책임이 있는 감사인의 경우 보고책임이 없는 현장감사인에 비해 감사증거 이외의 보고책임에 따른 환경변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보고책임이 있는 감사인은 계속기업문제를 특기사항으로 보고결정 할 때 피감사인과의 고객유지 관계 등과 같은 환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계감사기준에서는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결론짓도록 하고 있다. 만일 계속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경우 적절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고책임은 보다 더 심도있는 정보처리과정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역시 감사인의 판단전략도 보다 큰 일관성(consistency)과 합의성(consensus)을 증대시킬 것이다. 보고책임은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판단상 일관성, 안정성, 및 합의성을 증대시키고, 또한 보고책임을 가진 피험자는 더 큰 자기통찰력을 가질 것이다. 특히 문제가 있는 기업에 관한 정보에 입각한 판단에서 감사인들은 경험수준에 따라 일치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SAS No.59가 공표되기 이전에는 피감사회사가 존속할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감사인이 계속기업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일로부터 1년 동안 피감사회사가 되어야 한다. 감사인들은 계속기업에 관한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계속기업이 의문시될 때 적절한 감사보고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감사인들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Asare 1989, Kida 1980, Mutchler 1984 등). 예를 들면, Kida(1980)는 계속기업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 반드시 한정의견을 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결과를 감사인의 '상충되는 경제적 고려사항'(예를 들면, 감사인은 감사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싶지만 피감사회사의 투자자로부터 제기될 소송을 두려워한다)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Mutchler(1984)도 계속기업에 관한 판단에서 감사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감사상황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감사판단 및 의견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감사인의 판단에 대한 연구자 및 감사실무자들은 감사결정의 정확성에 대한 측정치로서 의견일치성에 의존한다. 마찬가지로 규제기관과 법정에서도 일치성을 의견결정의 질에 대한 대응치로 간주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많은 회계법인들이 어려운 감사 의견결정에 대하여 내부 자문팀의 조언을 활용하고 있다. 감사의견에 있어서 감사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특정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의 일치성의 결여에 기인한다는 가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감사인의 계속기업에 관한 판단에서 일치성의 결여가 어떤 감사의견을 표명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불일치를 설명해준다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의사결정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피감사회사의 존속가능성에 관한 검토와 보고에서 감사인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Asare 1989). SAS No.59는 이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책임을 다음과 같이 상당히 강화시켰다. 첫째, 기존의 감사기준(SAS No.34)에 비하여 감사인은 자산의 회수가능성과 부채의 분류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피감사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하여야 한다. 둘째, SAS No.59는 계속기업에 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 의미와 이를 감사보고서에 반영하는 조건 및 내용을 대폭적으로 변경하였다. 비록 기존연구에서는(예, Kida 1980) 감사인들의 계속기업에 관한 판단에서 상당한 수준의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감사기준이 달라진 SAS No.59 이후의 기간에도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시된다.

계속기업에 관한 판단은 다양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이를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렵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감사업무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감사기준이나 의사결정 보조수단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판단에서 사용되는 이용가능한 자료들은 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하여 애매하거나 상충되는 시사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다. 이 경우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유효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속기업에 대한 판단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감사인들 사이에도 의견의 일치를 얻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들은 계속기업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여러 증거들을 적절히 통합하는 여러 방법을 추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단 또는 의사결정 경험이 반드시 있는 감사인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증거와 사실들 중 어느 것이 계속기업으로의 존속여부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보다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다. 또한 감사인들은 교육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식을 쌓게 된다. 더구나 재무상태가 어려운 회사들을 감사하거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피감사회사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험이 많은 감사인들은 해당회사가 더 이상 계속기업으로의 존속가능성이 없게 되어 버리기 이전에 미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를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감사인들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하여 경험이 적은 감사인들에 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 V. 結 論

이 논문의 목적은 감사인의 판단 및 계속기업에 대한 의견결정을 할 때 보고책임의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 및 심리학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주된 초점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었다. 개인은 판단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관점에서 보고책임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전략 및 인지과정에서 보고책임의 영향, 그리고 계속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 및 의견결정을 할 때 보고책임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보고책임은 곤경에 처하거나 처할 가능성이 있을 때 개인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이용되는 전략은 해명과 사과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감사에서 감사인도 그러한 보고책임에 따른 전략을 사용한다. 감사인의 보고책임은 개인보다 보다 복잡한 인지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판단상 편이가 있으며 판단전략상 일관성 및 합의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보고책임 전략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 영향을 받고 개인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은 중요한 일이다. 사실상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전략은 종종 자신의 개인적 신념에 반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자 개인의 관점에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보고책임 전략은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한다. 개인은 이해관계자들의 비난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의 해명전략을 구사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기대비용에 대한 기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기대이익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부정적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보고책임을 다루는 전략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차원에 초점을 두어온 한편,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조직구성원들도 그들의 해명이나 사과에 서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인 경우도 내적 및 외적 모두 보고책임전략에 임한다는 것이다.

감사인의 계속기업에 관한 판단은 다양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이를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렵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감사업무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감사기준이나 의사결정 보조수단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판단에서 사용되는 이용 가능한 자료들은 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하여 애매하거나 상충되는 시사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다.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들은 계속기업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여러 증거들을 적절히 통합하는 여러 방법을 추구할 것이다.

따라서 보고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다 더 복잡한 인지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복잡한 정보처리과정은 개인의 판단과정에 긍정 및 부정적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가적 증거가 있다. 한편 보고책임은 순서효과를 완화시키며, 동시에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의 영향(희석효과)을 증가시킬 것이다. 부가적으로 보고책임은 일관성과 합의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감사인의 계속기업의 판단과 의견결정에서 이러한 가설들을 체계적으로 재검증함으로써 감사인의 의사결정과정

에서 감사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감사의 유효성과 효율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연구는 보고책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결과의 대부분이 집단이나 조직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논의의 대부분은 개인수준에서 보고책임의 영향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감사는 몇 감사업무(과업)에 대한 체계적 검토과정과 기타 업무에 대한 집단의 진단과정을 포함한다. 보고책임의 영향은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향후 연구는 감사상황의 복잡성에 초점을 둔 집단에 대한 실험 설계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재조사되어야 한다.

둘째, 계속기업과 관련된 감사증거들을 평가하고 통합하는데 감사인의 판단 및 의견결정에서는 심리학적 주요 과업변수(증거순서, 가설구조 등)에 의한 편의, 정보처리내용, 경험수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 요인이 계속기업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것이다. 그리고 보고책임이 높은 감사인이 보고책임이 낮은 감사인에 비해 계속기업 판단의 일관성 및 합의성은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요인에 대한 보다 많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 參 考 文 獻

- 高成孝(1994), 繼續企業에 대한 監査人の 判斷과 報告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 博士學位論文.
- AICPA(1981), The Auditor's Consideration When a Question Arises about an Entity's Continued Existence, SAS No.34, AICPA, New York.
- \_\_\_\_\_ (1988), The Auditors' Consideration of an Entity's Ability to Continue as a Going Concern, SAS No.59, AICPA.
- Asare, S. K.(1989), "The Auditors, Going Concern Opinion Decision: Intertaction of Task Variables and the Sequential Processing of Evidence," *Accounting Review* (April 1992) and Ph.D. Dissertation Uni. of Arizona.
- Ashton, A. H., & Ashton, R. H.(1988), "Sequential Belief Revision in Auditing," *Accounting Review*(October).
- Ashton, R. H.(1990), "Pressure and Performance in Accounting Decision Settings: Paradoxical Effects of Incentives, Feedback, and Justific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Supplement)
- \_\_\_\_\_ (1974), "An Experimental Study of Internal Control Judg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Spring).
- Beach, L. R., and Mitchell, T. R.(1978), "A Contingency Model for the Selection of Decision Strateg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July).
- Bosk, C. L.(1979), *Forgive and Remember: Managing Medical Failur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chman, T. A., Tetlock, P. E., and Reed, R. O.(1989), "Accountability and Auditors' Judgments about Contingent Event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Co.
- Chaiken, S.(1980), "Heuristic Versus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Use of Source Versus Message Cues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November).
- Cvetkovich, G.(1978), "Cognitive Accommodation, Language, and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Psychology*( June).

- Emby, C., and Gibbins, M.(1988), "Good Judgment in Public Accounting: Quality and Justificat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Spring).
- Ford, J. K., and Weldon, E.(1981), "Forewarning and Accountability: Effects on Memory-based Interpersonal Judgment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June).
- Gibbins, M., and Emby, C.(1984), "Evidence on the Nature of Professional Judgment in Public Accounting." Auditing Research Symposium 1984. Champaign, IL: College of Commerce & Business Administration.
- Hackenbrack, K.(1992) "Assessing a Company's Exposure to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Implications of Seemingly Irrelevant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Spring).
- Hagafors, R., and Brehmer, B.(1983), "Does Having to Justify One's Judgments Change the Nature of the Judgment Proc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April).
- Johnson, V. E., and Kaplan, S. E.(1991), "Experiment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Accountability on Auditor Judgments." Auditing: *Journal of Practice & Theory* (Supplement Vol. 10).
- Kida, T.(1980), "An Investigation into Auditor's Continuity and Related Qualification Judg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Autumn).
- \_\_\_\_\_ (1984), "The Impact of Hypothesis-Testing Strategies on Auditors' Use of Judgement Data,"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Spring).
- Lord, A. T.(1992), "Pressure: A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for Behavioral Research in Auditing." Auditing: *Journal of Practice & Theory*(Fall).
- McCallister, R. W., Mitchell, T. R., and Beach, L. R.(1979), "The Contingency Model for the Selection of Decision Strategies: An Empirical Test of the Effects of Significance, Accountability, and Reversibilit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October).
- Messier Jr., W. F., & Quilliam, W. C.(1992), "The Effect of Accountability on Judgment: Development of Hypotheses for Auditing," Auditing: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11 Supplement.

- Mutchler, J.(1984), "Auditor's Perception of the Going Concern Opinion," *Auditing: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Spring).
- Rozelle, R. M. and Baxter, J. C.(1981), "Influence of Role Pressures on the Perceiver: Judgments of Videotaped Interviews Varying Judge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August).
- Schlenker, B. R.(1980), "Impression Management: The Self-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Belmont, CA: Brooks-Cole.
- \_\_\_\_\_ (1986), *Personal Accountability: Challenges and Impediments in the Quest for Excellence*, Report for Navy Personne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 Smith, J. F. and Kida, T.(1991), "Heuristics and Biases: Expertise and Task Realism in Auditing." *Psychological Bulletin*(May).
- Tetlock, P. E.(1983), "Accountability and the Complexity of Thou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July).
- \_\_\_\_\_ (1985a), "Accountability: The Neglected Social Context of Judgment and choice." In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Vol. 7), eds. B. M. Staw and L. Cummings. Greenwich, Ct: JAI Press.
- \_\_\_\_\_ (1985b), "Toward an Intuitive Politician Model of the Attribution Process." In *The Self and Social Life*, ed. B. R. Schlenker. New York: McGraw-Hill.
- \_\_\_\_\_, and Boettger, R.(1990), "Accountability: A Social Magnifier of the Dilu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September).
- \_\_\_\_\_, and Kim, J. L.(1987), "Accountability and Judgment Processes in a Personality Prediction Ta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April).